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안 제3조 신설)

- 1)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의 보호방안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3)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발행 폐지 신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나. 환급금액의 비율(안 제4조 신설)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소지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도록 함.

다.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안 제5조 신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해당 반기 월별 발행액, 환전액 및 가맹점수 등을 포함하는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지원(안 제6조 신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시장·도지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위반행위의 조사(안 제7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법행위 발생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한 때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하려면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대표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에 원인이 되는 사실(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내용 포함), 보고 또는 자료제출 날짜 및 장소

등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하도록 함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8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2천만원 이하,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별표1)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 필요

라. 기 타 : 입법예고 필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판매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발행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견본(안)
2. 지역사랑상품권발행 계획서 또는 직전 반기의 지역사랑상품권발행 실적보고서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폐지 신고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폐지 후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의 보호방안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환급금액의 비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지역사랑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 법 제14조에 따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해당 반기 월별 발행액, 환전액 및 가맹점수
2. 지역사랑상품권의 해당 반기 월별 권면금액별 발행·환전에 관한 수량 및 금액
3. 기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하는 각종 실적자료는 별도 제출

제6조(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특별시·광역시·도(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반행위의 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

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하려면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대표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대표자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2. 과태료 부과에 원인이 되는 사실(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3. 보고 또는 자료제출 날짜 및 장소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연 락 처	(044) 200 - 394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이후 다시 같은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업무를 대행한 자	법 제20조제1항제1호	
1) 1차 위반		500
2) 2차 위반		1,000
3) 3차 이상 위반		2,000
나.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법 제20조제1항제2호	

1) 1차 위반		500
2) 2차 위반		1,000
3) 3차 이상 위반		2,000
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개별가맹점	법 제20조제1항제3호	
1) 1차 위반		500
2) 2차 위반		1,000
3) 3차 이상 위반		2,000
라.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매대행가맹점	법 제20조제1항제4호	
1) 법 제1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에 대하여 환전을 대행한 경우		
가) 1차 위반		1,000
나) 2차 위반		1,500
다) 3차 이상 위반		2,000
2) 법 제10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한 경우		
가) 1차 위반		500
나) 2차 위반		1,000
다) 3차 이상 위반		2,000
마. 법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0조제2항	
1) 1차 위반		100
2) 2차 위반		300
3) 3차 이상 위반		500